

부당청구 적발 행정조사 중 폐업 후 다른 병원개업, 개설의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갈음 과

징금처분 적법: 서울고등법원 2024. 7. 19. 선고 2023누67301 판결



- (1)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적발, 확인서 받음. 해당 병원을  
현지조사 대상기관 선정 후 폐업 + 병원 개설자가 5개월 후 다른 병원 개설 후  
운영 중
- (2) 공단에서 병원개설 의사에게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처분을  
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
- (3) 쟁점: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인적 처분 성격 여부(적극)

(4) 판결 요지: ① 의료급여기관은 의료업의 단위가 되는 인적·물적 결합체에 불과하여 법인격이 없고, 결국 의료급여기관에 관한 법률적 권리·의무의 주체는 법인격이 있는 개설·운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점, ②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 소정의 '과징금을 내야 할 자'라 함은 의료급여기관이 아닌, 법인격이 있는 그 개설·운영자를 의미하는 점, ③ 그 개설·운영자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강제징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 강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그 개설·운영자 소유의 재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은 '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'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의료급여기관 개설·운영자에 대하여 그러한 의무위반 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함

(5) 구체적 사안의 판단: A병원의 개설·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 절차 중 내지 그러한 절차가 예정된 사실을 인지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A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A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관련 규정에서 정한 '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'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원고에 대한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함.

- (6)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0두39365 판결,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2두 30546 판결 등에 따르면,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의료급여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의료급여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의료급여기관 및 폐업 후 그 의료급여기관의 개설자가 새로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.
- (7) 폐업한 경우에 대물적 처분으로서의 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인 그 의료급여기관 업무 자체가 없어지기는 하였으나,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개설·운영자에 대한 대인적 처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, 1인이 단독으로 의료급여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부당급여청구를 한 후 해당 기관을 폐업한 경우에는 위 개설·운영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.
- (8) C병원의 개설·운영자인 원고가 행정기관에 의하여 부당청구가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예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C병원을 스스로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들고 더 이상 C병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들고 있는 업무정지처분이 제재수단으로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

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.

첨부: 서울고등법원 2024. 7. 19. 선고 2023누67301 판결

행정소송, 이의신청, 소청심사, 집행정지, 민형사소송, 법률자문, A~Z 수행경력

T. 02-591-0657 E. [kkh@kasanlaw.com](mailto:kkh@kasanlaw.com) H. [www.kasanlaw.com](http://www.kasanlaw.com)